<u>⚠</u>무너져 내리는 골재에 깔림 <u>⚠</u>

재해개요

2024. 5. 00.(목) 09:30경 충북 단양군 소재 (취)이 이 이공장 석회석 골재 야적장에서 재해자(굴착기 운전원)가 굴착기와 골재 더미 사이에 위치하던 중 무너져 내리는 골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.



🎒 발생원인

- ▶ 작업방법 부적절
- (적재높이) 석회석 골재는 약 10m 높이로 적재되어 있어 굴착기의 작업반경 초과
- (굴착위치) 굴착기로 골재 더미 하단부를 파내 더미를 무너뜨리며 상차작업 수행
- ▶ 작업계획 미수립
-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·지반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, 그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 미수립
- ▶ 출입금지 조치 미비
- 골재 야적장은 골재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장소이나,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미비

예방대책

- ② 골재 적재 방식 및 작업방법 변경
 - (경사각) 골재 적재 시 경사각을 완만하게 하여 골재의 무너짐 방지
 - (적재높이) 굴착기가 더미 상단부를 퍼낼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골재 적재
 - (작업방법) 굴착기로 골재 더미의 상단부를 퍼내 안전한 경사각을 유지
- 2 작업계획 수립
 - (사전조사) 골재 상차 작업을 수행하기 전, 작업구역의 지형·지반 상태 대하여 사전조사 수행
 - (계획수립) 작업구역에 적절한 굴착기의 운행경로 및 안전한 작업방법등에 대하여 작업계획 수립
 - (근로자 주지) 수립한 작업계획은 근로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주지교육 시행
- 3 골재 더미 주변 근로자 출입 통제
 - (출입통제) 10m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골재 더미는 굴착·상차 작업 혹은 외부 환경조건에 의해 골재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, 골재 더미 주변부는 근로자의 출입 통제 필요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